

# 경기 고등학교 제 75 회 동창회 회칙

회칙 개정 2023 년 07 월 05 일

## 제 1 조 (명칭)

본회는 "경기고등학교 제 75 회 동창회"라 한다.

##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발전을 꾀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친목 증진 사업
2. 동창회보 및 회원 명부의 발간
3.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4 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각 시도와 주요 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1976 년 입학하여 1979 년에 졸업한 경기고등학교 75 회 졸업생을 정회원으로 하고, 1976 년 입학한 자를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 의무를 진다.

## 제 7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명
  2. 부회장 7 명 이내 (총동창회 부회장 1~2 인 포함)
  3. 고문 1 명 (직전회장)
  4. 감사 1 명
  5. 이사 30 명 이상
- ※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를 회장단이라 하고, 이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이라고 한다.

## 제 8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단에 속하는 임원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단 변경 시 이사를 재 구성할 수 있다
3. 임기의 기산일은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4. 보선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 임기는 다른 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5. 임기중 회장단 전원이 개선(改選) 때에는 잔여 임기가 1 년 이상이면 신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1 년 미만이면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정규 임기 기간까지로 한다.

불분명하면 임원을 개선한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6.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제 9 조 (임원의 선출 방법)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개별적인 선출에 의한다. (추천 또는 투표)
2. 고문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3. 이사는 소규모 활동 중이며 회장단이 인정한 소모임 대표 및 회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부회장은 회장, 임원 및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5. 총동창회 활동 목적의 부회장은 회장이 별도로 위촉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직무)

1.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회장단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동창회 업무를 통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회장단 회의의 의결로 지명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 기간은 회장 잔여 임기기간까지로 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동창회 운영을 위한 일반적 실무를 담당한다.

#### 제 11 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출석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의 개정
  - 나. 회장단 선임
  - 다.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라.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마. 기타 회장단 과반수 이상 또는 출석 회원 40 인 이상이 발의한 사항
3.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정기총회는 연 1 회 (7 월 5 일)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또는 회장단 회의 의결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제 12 조 (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 목적
  - 가. 사업 계획에 대한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한다.
  - 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산안의 감사
    - 2) 회비 및 분담금의 결정
    -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 규정, 시행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4) 총회 의사 일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주요한 사항
2. 회장단 회의는 회장단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3. 회장단 회의 개최

- 가. 회장이 필요 시 개최한다.
- 나. 회장단 과반수 요청 시 회장이 개최한다.

#### 제 13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목적
  - 가. 사업 계획에 대한 운영상황 일부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한다.
  - 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1) 회장단에서 결정한 행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협의
    - 2) 소모임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
    - 2) 기타 동창회 발전을 위한 주요한 사항
2. 운영위원회 참석 범위
  - 가. 회장단
  - 나. 이사
3. 운영위원 회의 개최
  - 가. 회장이 필요 시 개최한다.
  - 나. 회장단 과반수 요청 시 회장이 개최한다.
  - 다. 이사 1/4 이상이 요청 시 회장이 개최 한다.

#### 제 14 조 (재정)

본회의 운영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회원은 年 5 만원으로 하고, 회장단 및 이사는 행사 시 찬조를 위해 현물이나 현금을 낼 수 있다..

#### 제 15 조 (경조사)

1. 최근 5 년간 회비를 1 회 이상 납부한 회원의 조사(弔事) 시 조기(弔旗)를 지원하고, 경사 시 축하기를 전달한다.
  - 가. 경사 : 회원 자녀 결혼, 회원의 개업식 또는 축하 행사
  - 나. 조사 : 회원 부모나 빙부모 사망
  - 다. 회장은 제반 사항을 비추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장단 협의를 거쳐 경조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고등학교 총 동창회 회칙에 따른다.

#### 제 16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7 월 6 일부터 익년 7 월 5 일까지로 한다.

#### 제 17 조 (회칙 효력)

본 회칙은 1989. 7. 5 부터 시행한다.  
개정 회칙은 2023 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